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35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임도 확대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임도 확대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개정안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조의2(임도의 확대 및 관리)</u> <u>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임도의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③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1)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임도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의 사항을 포함한 전국 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²⁾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임도 우선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6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임도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 1)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3)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임도설치계획 작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에 우선적으로 계획
 2. 국·민유림 구분 없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되어 활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하되, 유역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3. 예정노선은 기설임도(이미 만들어 놓은 임도)와 장래에 추가로 설치할 노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
 4. 예정노선의 총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인 되는 단거리계획은 가급적 지양

이처럼 임도의 계획제도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임도설치 장기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는 관계 기관에 대한 구속력 및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임도 확충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계획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한 산림청장의 노력 의무 규정을 통해 임도계획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림청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기존 임도계획제도와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는

-
- 5. 테마임도로 활용 가능한 노선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지
 - 6. 임도노선 유역 내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거나 연결 또는 인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정노선 조사서(별지 제1호의2서식) 1부
 - 2. 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1) 1부
 -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공문사본 1부(다른 산림부서와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 ⑤ 임도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임도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별지 제1호의3서식)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임도설치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② 임도설치계획은 시·도 및 지방산림청 중·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임도설치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9조의2 제목 및 제1항 중 “임도(의) 확대 및 관리”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되는 규정이
므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가. 임도 현황

- '68년부터 조성, '24년말까지 총 26,785km 조성(임도밀도 4.25m/ha)
 - * 국유림 입목 매각지 3개소에서 15km(강원. 홍천. 북방면. 도사곡리 9.0km, 강원. 인제. 기린면 상남리 4.0km, 전북. 무주. 설천면. 삼곡리 2.0km)를 설치한 것이 최초
 - 국가임도 9,095km(5.50m/ha), 지방임도 17,690km(3.81m/ha)
- 우리나라 임도밀도 4.25m/ha는 최소 필요 밀도*보다 부족한 실정
 - *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최소로 필요한 우리나라 임도밀도인 ha당 6.8m('20, 국립산림과학원)의 63%(4.3m/ha) 수준

나. '25년 임도 신설 및 관리현황

- 총 1,255km의 임도 신설 및 관리(예산: 국비기준 3,848억원)
 - (신설 3,423억원) 간선임도 549km^(1,218억원), 산불진화임도 650km^(2,075억원), 작업임도 26km^(46억원), 운반로 구조개선 30km^(45억원), 타당성평가 735km^(39억원)
 - (관리 425억원) 노폭확장 200km^(216억원), 구조개량 200km^(136억원), 위탁관리 1,750km^(33억원), 임도관리단 108명^(30억원),유지보수 1식^(7억원), 임도망도정비 1식^(3억원)
- 최근 5년간('20~'24) 63.8%(1,118억원)의 예산 증가 및 4,323km의 임도를 신설하고, 11,170억원의 예산투자
 - * 임도예산(억원) : ('20) 1,752→('21) 1,765→('22) 2,314→('23) 2,469→('24) 2,870→('25) 3,848
 - * 임도설치(km) : ('20) 745→('21) 773→('22) 949→('23) 918→('24) 938→('25) 1,255

다. 임도 조성사업 추진 흐름도

